

# 등급분류 위원회 운영 규정

제 정 : 2013. 3. 27.

개 정 : 2018. 3. 28.

**제1조 (설치 및 명칭)** 본 위원회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등급분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칭함)라 칭한다 <개정 18.3.28.>

**제2조 (목적)** 본 위원회는 대한장애인럭비협회(이하 “장애인럭비협회”라 칭함)가 주최·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에서 등급분류사들의 공명정대한 등급활동의 보장과 선수들의 등급을 장려하며, 독립적인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8.3.28.>

**제3조 (적용)** 장애인럭비협회에 소속되어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등급분류사 및 선수등급에 적용한다. <개정 18.3.28.>

**제4조 (기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정한 등급분류사상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자문
2. 등급분류수칙 제·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
3. 등급분류사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
4. 등급분류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
5.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6. 국제등급분류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
7. 국내 퀘드 선수들의 등급에 대한 사항

**제5조 (조직)**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, 위원 약간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이 임명하고,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에 의해 반드시 등급분류자격을 소지한 자와 관련지식을 가진 외부인으로 임명한다. <개정 18.3.28.>

**제6조 (임기)** 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럭비협회 정기총회 기준으로 하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18.3.28.>

**제7조 (운영)**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괄하며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본 위원회는 장애인력비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이를 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8.3.28.>
3.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4. 본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차기 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<개정 18.3.28.>
5. 위원장 및 위원이 계류중인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 관련이 있는 경우에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.
6. 위원의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8조 (직무 및 권한)** ①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장애인력비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될 수 없다.<개정 18.3.28.>

② 필요한 경우에 본 위원회의 의결로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장애인력비협회에 건의할 수 있다.<개정 18.3.28.>

**제9조 (역할)** ① 본 위원회는 등급분류위원장 및 등급분류요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과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.

② 본 위원회는 각종 대회에서의 등급분류활동 및 등급분류교육과정, 등급분류회의 등의 행사참가에 따른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.

③ 본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등급분류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평가과정을 거쳐 등급분류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④ 본 위원회는 매년 우수등급분류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공정 또는 부도덕하거나 등급분류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 장애인력비협회 법 제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18.3.28.>

**제10조 (자격)** 자격기준과 선별은 다음의 조건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.

① 본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등급분류 강습회에서 소정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을 경우 절차에 의해 자격이 주어진다.

② 급수는 표-1의 의해 진행하며 자격과 동시에 본 위원회 혹은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에 공인 등급분류사로 활동이 가능하다.<개정 18.3.28.>

**제11조 (징계)** 등급분류활동에 있어 장애인력비협회에서 승인 하지 아니한 대회에 참가하여 등급분류 활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를 걸쳐 징계한다. <개정 18.3.28.>

**제12조 (선수등급판정)** ① 선수의 평가 및 등급 부여 이외의 사항을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본 위원에서 결정하며 이 결정사항은 제 8조에 의거의 장애인럭비협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다.

② 등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혹은 내규를 두고 관리한다. <개정 18.3.28.>

**제13조 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준용할 수 없을 때와 해석이 불분명한 때에는 장애인럭비협회 정관 및 제 규정 또는 장애인럭비협회가 결정한 바에 따르며 국제등급분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18.3.28.>

#### 부 칙 (12. 3. 27.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(18. 3. 28.)

**제1조 (시행일)**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<18.3.28.>

<표-1> 급수별 자격 기준 및 활동 범위

구분	급수	자격 조건	활동범위
국제	Level 4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※ 세계선수권대회, 패럴림픽 등급분류 위원장
	Level 3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※ 지역선수권대회 등급분류 위원장
	Level 2	1. 국제연맹에서 평가에 한함	※ 국제대회 패널 인증
	Level 1	1. 국내등급분류 소지자	※ 국제대회 트레이니
국내	1급	1.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2급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등급분류 패널에 활동을 하여 30명 이상의 선수에 대하여 등급분류 평가 경력이 있는 자 2. 휠체어럭비 관련 대회에서 등급분류 위원장으로 5회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.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국제레벨 2급 이상인 자	※ 2급의 조건 포함 ※ 위원장 자격 부여 ※ 국제대회 우선 참가 지원
	2급	1.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3급 자격 소지자로 3년 이상 등급분류 패널에 활동을 하여 20명 이상의 선수에 대하여 등급분류 평가 경력이 있는 자 2. 인체해부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 졸업자로 관련분야 (의사, 치료사, 처방사)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.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에 강사 2회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4. 1, 2, 3항을 인정 받은 뒤 이론시험 80점 이상 해당되는 자	※ 3급의 조건 포함 ※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사 자격 ※ 국제교류대회 지원 ※ 패널장으로 인정
	3급	1.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4급 자격 소지자로 1년 이상 등급분류 패널에 활동을 하여 5명 이상의 선수에 대하여 등급분류 평가 경력이 있는 자 (PCB포함) 2. 인체해부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. 1, 2항을 인정받은 뒤 이론시험 80점 이상인 자	※ 3급의 조건 포함 ※ 교육 지원 관리 ※ 국내대회 패널 ※ 은퇴선수의 경우 등급분류사 인정
	4급	1. 대한장애인럭비협회에서 주최하는 휠체어럭비 등급분류 강습회에서 이론교육 7시간, 실습교육 3시간 이상 수료 후 자격 검정 시험에서 70점 이상 득점한 자 2. 인체 해부학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3. 휠체어럭비 경력 3년 이상인 자	※ 선수(PCB) ※ 대회시 등급분류 참관